

2. 세액 경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경감된다.

- 1구의 주택에 가구원이 성인 1인인 경우
-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이 정하는 저소득층
- 장애인에 대한 경감

V. Council Tax의 경감

1. 경감 제도의 내용

council tax는 1구의 주택에 2명의 성인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된다. 만약의 1구의 주택에 1명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25%의 경감율이 적용된다. 또 1구의 주택이 어느 누구의 주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50%의 경감율이 적용된다. 또 빈집이나 제2의 주택(second home)인 경우에도 50% 경감 대상이 된다. 1구의 주택에 3인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액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일정한 경우에는 성인이라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구의 주택에 2인이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25%

의 경감율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경감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주된 주택으로 사용하는 성인의 수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수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거주자수의 계산시 제외되는 자

1) 견습생(apprentices)

국립직업자격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견습중인 자는 거주자의 수를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견습생으로서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급이 160파운드 이내이어야 한다.

2) 청년 피훈련자(youth training trainees)

청년훈련계획(Youth Training Scheme)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는 25세 이하의 청년도 거주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3) 학생(students)